사람과 문화를 이어 미래로 나아갑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수신자 대한건설협회장
(경유)
제목 인천공항 인근 지역내 드론 비행금지 안내 및 홍보 요청

1. 귀 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인천국제공항은 항공기가 24시간 무중단 운항하는 공항으로 항공안전법에 의거, 공항 반경 9.3km 이내지역은 항공기 운항 및 이·착륙에 막대한 지장을 주기에 드론을 포함한 초경량 비행장치의 비행이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3. 그러나 최근 영종도 인근지역(영종도, 무의도 등)의 건설, 건축 현장에서 촬영 등을 목적으로 드론을 사용하여 적발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4. 이에 귀 협회 회원을 대상으로 붙임과 같이 공항 주변에 대한 드론 비행금지 안내 및 홍보를 요청드리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공항 인근 지역내 드론 비행금지 안내요청서 1부. 끝.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과장	오재만	팀장	신동화	처장	전결 김현태

협조

접수

시행 항공보안처-2864 (2021.09.09.) 접수 ( )

우 22382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424번길 47 / http://www.airport.kr
전화 (032)741-6898 /전송 (032)741- / iiacojm@airport.kr / 비공개(5,6,7)
갑질행위 상담전화 032-741-2145(청렴신문고)/익명신고 www.redwhistle.org

인천국제공항 주변지역 드론 비행금지 안내

○ 인천국제공항은 항공안전법에 의거, 공항 반경 9.3km 이내 지역에서 국토부 장관의 승인 없이 드론을 비행하는 것은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항 인근지역(영종도, 무의도, 신·시·모도 지역 등)에서 일반인들이 취미 및 레저활동을 목적으로 드론(초경량비행장치)을 무단으로 비행하여 항공기 운항 및 이·착륙에 영향을 주는 매우 위험한 일들이 계속해서 발생되고 있으며

○ 무단으로 드론을 비행하는 것은 항공기 운항에 심각한 위험을 불러일으키는 행위로서 대형 인명사고와 재산상의 큰 손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 만약, 항공안전법을 위반하여 불법적으로 드론을 무단 비행할 경우 5백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항공기 운항중단 등에 대한 민·형사상 손해배상의 책임을 질 수가 있습니다.

○ 이러한 사항을 유념하시어 소속 회원 및 관계사에 적극적으로 홍보 및 안내하여 주시기를 거듭 협조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인천국제공항 주변 드론 비행금지구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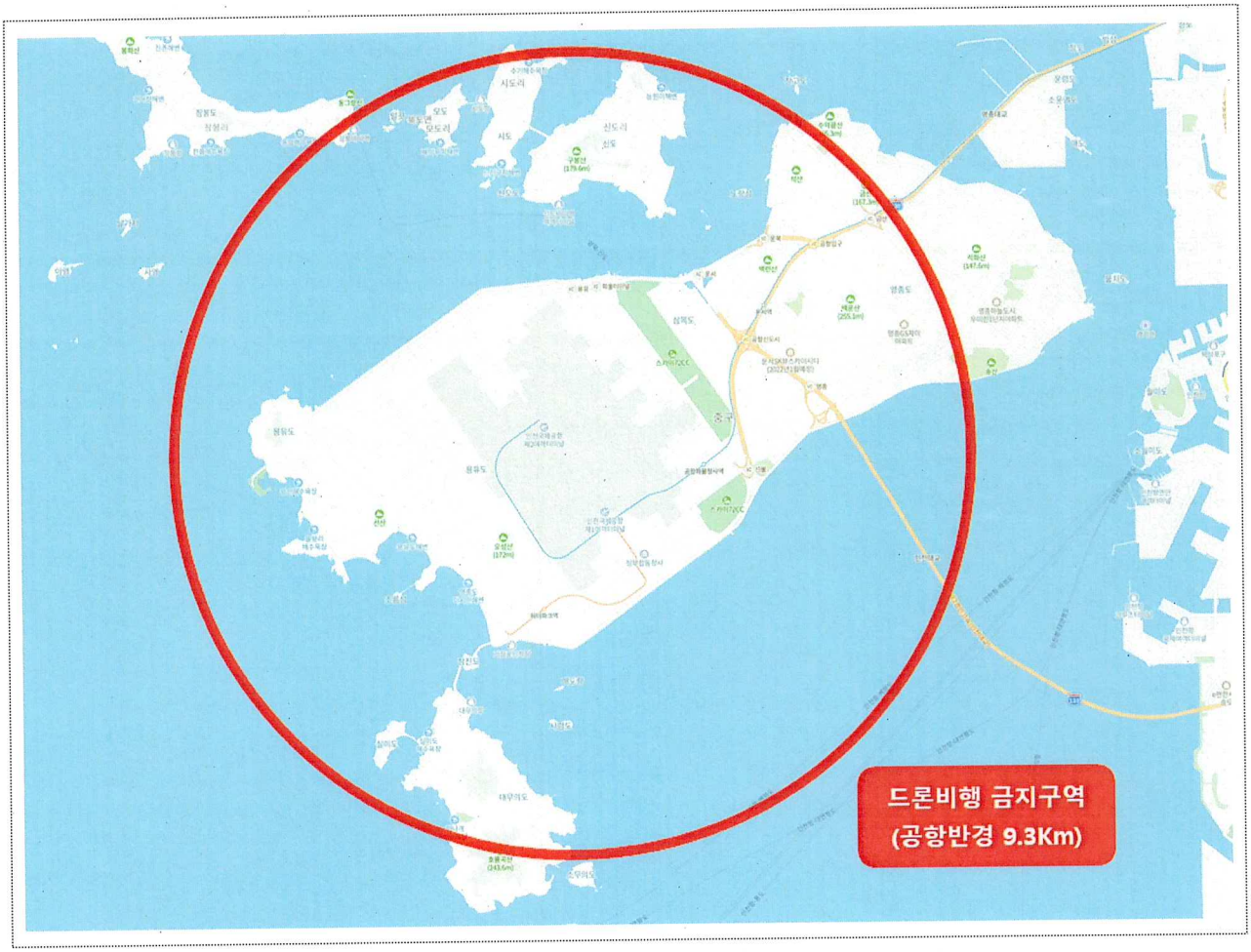
드론 비행금지 구역
(인천국제공항 반경 9.3km 이내 지역)